

	<h2 style="margin: 0;">국제교류학생 관리규정</h2>	표준번호	교무행정 6-22-1
		제정일자	2016.12.19
		개정일자	2018. 8.27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성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라 한다)와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 및 학점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, 본 대학 재학생의 해외파견 및 외국대학생의 초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국제교류학생”이라 함은 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외국대학과 상호교류하는 모든 학생을 지칭한다.
2. “교환학생(exchange student)”이라 함은 본 대학과 외국대학이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의거하여 강의수강 및 학점교류 등의 목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학생을 말한다.
3. “복수학위학생(dual degree student)”이라 함은 본 대학과 외국대학이 체결한 학술교류협정에 의거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본교 및 외국대학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받아 양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후 각 대학의 명의로 각각 학위를 취득할 목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학생을 말한다.
4. “기타 연수생”이라 함은 동조 2내지 3호 이외에 본 대학이 교육 및 연수의 목적으로 외국대학과 교류하는 국제교류학생을 지칭한다.
5. “해외학점인정학생”이라 함은 본 대학에서 주관하여 선발하는 경우 이외에 자의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외국대학의 정규과정 또는 대학부설 어학기관에서 수학하고 취득한 학점을 본 대학에서 인정받는 학생을 지칭한다.
6. 이 규정에서 말하는 “학기”는 별도의 부가설명이 없는 한 본 대학의 학사일정에 따른 학기를 기준으로 한다.

제3조(국제교류학생심의위원회) ①국제교류학생의 파견 및 초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학생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심의위원회는 교학지원처장, 기획조정실장, 국제교류원장, 입학홍보처장, 행정지원처장 및 해당 학과장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국제교류원장으로 한다.

③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본 대학 재학생의 외국대학 수학승인
2. 외국대학생의 우리대학 수학승인 및 체류조건 결정
3. 장학금 등 지원사항
4. 외국대학 취득 학점의 인정 기준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
5. 기타 국제교류학생에 관한 주요사항

④심의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
제2장 본 대학 학생의 파견

제4조(교환학생의 자격) 본 대학 교환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18학점 이상 취득(예정)자 (편입생은 편입후 1개 학기 이상 이수(예정)자)
2. 지원당시까지 총평점평균이 3.00이상인 자 (단,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총평점평균 기준이 본 대학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에 따름)
3. 상대 외국대학에서 요구하는 어학실력요건 구비자
4. 기타 상대대학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충족자

제5조(교환학생의 신청방법) ① 교환학생의 신청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은 공고한다.

② 교환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본 대학 학생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지정기일까지 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국제교류학생지원서[별지제1호서식]
2. 교환학생 수학계획서[별지제2호서식]
3. 해당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(필요시)
4. 기타 필요서류

제6조(교환학생의 선발절차) ①심의위원회에서는 제5조에 따라 신청한 교환학생 지원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.

②교류분야 및 인원수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과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심의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.

③전항의 절차에 따라 적격자로 선정된 후보자는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본 대학에서 파견하는 교환학생으로 최종 선발된다.

제7조(교환학생의 선발기준) 선발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총평점평균, 해당외국어 실력, 면접 결과, 수학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.

제8조(복수학위학생의 선발) 복수학위학생의 자격기준 및 선발은 교환학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, 각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 내용에 따라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9조(기타 연수생의 선발) 기타 연수생의 자격기준 및 선발은 교환학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, 각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 내용에 따라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10조(해외학점인정학생의 신청) ①해외학점인정학생은 해당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국제교류원에 제출하여 외국대학 수학허가를 받아야 한다.

1. 국제교류학생지원서[별지제1호서식]
2.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사본
3. 해당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(필요시)
4. 기타 필요서류

②해외학점인정학생은 외국대학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개별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소요경

비를 각자 부담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학기간) ①본 대학 학생의 외국대학 수학기간은 학칙에 정한 수업연한의 1/2 범위 이내에서 외국대학과 체결한 교류협정에 따른다.

②복수학위학생의 외국대학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조 1항에 정한 제한연한을 초과하여 외국대학 수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모든 학생은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학생 프로그램에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참가 할 수 있다. 다만, 여석이 발생하거나 경쟁선발이 아닌 기타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복수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.

제12조(등록 및 수업연한 등) ①본 대학에서 파견하는 국제교류학생은 파견기간동안 본 대학에 등록하여 재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. 다만, 계절학기에 파견하는 경우 본 대학의 계절학기 학점부여 기준에 따른다.

②국제교류학생이 파견기간 동안 본 대학에 정규등록하는 학기는 본 대학 학칙에 정한 수업연한에 포함하여 인정한다.

③교환학생 및 복수학위학생은 파견기간 동안 휴학할 수 없다.

④본 대학에서 파견하는 국제교류학생은 복수학위학생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졸업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다.

제13조(귀국보고 및 변경신청) ①본 대학에서 파견한 국제교류학생은 지정된 파견기간이 종료되면 4주 이내에 결과보고서[별지제3호서식]을 국제교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사전에 허가받은 외국대학 수학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국제교류학생변경원[별지제4호서식]을 제출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14조(교과과정의 이수 등) ①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본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모든 국제교류학생은 외국대학에서 이수할 과목에 대하여 사전에 소속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고 국제교류학생출국전 수강상대표[별지제5호서식]을 국제교류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외국대학 어학과정에서 공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②외국대학 취득학점의 인정은 이 규정의 제4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.

제15조 (제경비 및 장학금 등) ①모든 국제교류학생은 외국대학 수학에 필요한 수업료 및 생활비 등 소요경비 일체를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교환학생 및 복수학위학생은 본 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파견기간동안 수학하는 대학의 수업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.

③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3장 외국대학생의 초청

제16조(외국대학 교환학생의 수학허가) 외국대학 교환학생의 수학허가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은 법무부 지침, 교육부 지침에 의거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7조(복수학위 학생) 복수학위학생의 자격기준 및 선발은 교환학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되, 각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 내용에 따라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제18조(외국대학생의 수학기간) 심의위원회에서는 국제교류학생지원서 [별지제1호서식]를 받아 외국대학생의 수학학과와 학과 및 수학기간 등 교류협정에 따라 제반사항을 결정한다.

제19조(과목의 이수 등) ①외국대학생은 본 대학과 소속대학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과목을 신청한다.

②필요한 경우 외국대학생을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③복수학위학생은 입학전에 해당학과, 교학지원처와 학점인정, 이수과목등에 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20조(제경비) ①외국대학생은 본 대학 수학에 필요한 수업료 및 생활비 등 소요경비 일체를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외국대학 교환학생은 본 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류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환기간동안 본 대학에서의 수업료가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으며,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외국대학과 체결한 협정에 의거하여 상호 생활관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(외국대학생의 관리 등) ①소속 학과에서는 외국대학생에게 지도교수를 지정해 주어 수강신청 등 제반 학사지도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.

②외국대학생은 지정된 수학기간동안 본 대학 재학생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, 관련부서에서는 주거의 제공 등 외국대학생의 생활편의에 최선을 다하여 협조한다.

제4장 외국대학 취득학점의 인정

제22조(학점인정 절차 및 방법) ①외국대학에서 수학하여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국제교류학생은 수학 대학 학기 종료 후 다음의 서류를 학과에 제출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외국대학취득학점인정신청서 [별지제6호서식]

2. 외국대학의 성적증명서(영문 증명서 포함)

3. 성적평가 체계 및 과목 개요서(영문)

②해당학과에서는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국제교류원을 경유하여 교학지원처에 제출한다.

③교학지원처에서는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학칙 및 제규정에 위배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한 경우, 의견을 첨부하여 국제교류원을 경유, 학과에 반송하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④학적부에 성적을 입력한 이후로는 인정 학점의 수정 또는 추가 인정을 할 수 없다.

제23조(학점인정 심의 기준) ①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은 영문명을 학적부에 기재한다. 단, 본교의 필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조 3항에 따른다.

②외국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종별은 본 대학의 전공 및 교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대학교 교양필수 및 교직과목으로의 인정은 불허한다.

③필수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학과의 심의를 거친 후 대체 인정한다.

④교과목별 학점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본

대학교와 학점체계가 다른 경우 교학지원처가 해당 학부(과)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.

⑤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은 Pass, D이상,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Pass로 인정한다.

⑥복수학위학생은 학과의 결재를 받아 과건전에 졸업과제를 지정하여 졸업논문·졸업시험 등의 졸업요건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.

⑦외국대학 부설 어학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업시간 32시간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해당언어 지정과목으로 최대 6학점까지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⑧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국제교류학생에게는 학기당 최저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
⑨국제교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사전에 허가받은 사항에 하자가 없을 경우 본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제5장 기 타

제24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국제교류학생 관련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반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8.27.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직제개편에 따른 경과조치) ‘기숙사’를 ‘생활관’으로 ‘기숙사(부)사감’을 ‘생활관(부)관장’으로 변경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국제교류학생지원서				결 재	담 당	팀 장	처 장
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교환학생 <input type="checkbox"/> 복수학위학생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연수생: _____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학점인정학생						
성 명 <small>* 영문성명은 여권과 동일하게 작성</small>	(한글)	주민등록번호					
	(한문)	E-mail					
	(영문)	학번(학년)		(____ 학년)			
소 속	학부(과)						
주 소							
전 화 번 호			휴대전화번호				
군 필 여 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		여권소지여부		<input type="checkbox"/>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<small>* 유효기간 : _____ 년 월까지</small>		
이 수 학 기	정규학기 총 _____ 학기 이수		재 적 상 태		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학중 <input type="checkbox"/> 휴학중		
총 취 득 학 점	_____ 학점		평 점 평 균		/ 4.50		
졸 업 예 정 일	_____ 년 _____ 월 졸업예정		편 입 여 부	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입학 <input type="checkbox"/> 편입학		
외 국 어 성 적	시 험 명		성 적		응시일자		
희 망 수 학 대 학			학과(전공)				
수 학 대 학 주 소							
희 망 수 학 기 간	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~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(총 _____ 개월, _____ 개 학기)						
보 호 자	성 명			지원자와의 관계			
	주 소			전 화			
	직장명	직 위		전 화			
<p>본인은 수성대학교 국제교류학생으로 참가하고자 위와 같이 지원하며,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동안 양교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수성대학교 학생신분에 맞는 언행과 생활태도로 학업에 열중할 것과 외국대학 수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파견기간동안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학교에 책임을 묻지않을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.</p> <p>붙임 : 1. 해당외국어 능력시험 성적표 2. 입학허가서(해당자만) 3. 교환학생 수학계획서(해당자만) 4. 기타구비서류</p> <div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top: 20px;"> <p>_____ 년 _____ 월 _____ 일</p> <p>지원자 성명 : _____ (인)</p> <p>보호자 성명 : _____ (인)</p> </div>							
수성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				경 유	학과장		

[별지 제2호 서식]

교환학생 수학계획서			
성 명		학번(학년)	(학년)
소 속	학부(과)		
수학희망대학			
수학희망기간	년 월 ~ 년 월 <총 개월>	제출일자	

[별지 제3호 서식]

국제교류학생 결과보고서			
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교환학생 <input type="checkbox"/> 복수학위학생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연수생: _____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학점인정학생		
성 명		학 번 (학년)	
소 속	학과		
주 소			
전 화		핸드폰번호	
E-mail			
수학대학		학과(전공)	
수학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총 개월, 개학기)		
<p>본인은 국제교류학생으로서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후 그 결과를 위와같이 보고합니다.</p> <p>붙임 : 1. 교환학생체험기(해당자만) 1부 2. 기타 첨부서류</p> <p>년 월 일</p> <p>신고인 : (인)</p> <p>수성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</p>			

[별지 제4호 서식]

국제교류학생 변경원		결	담	팀	처
		재	당	장	장
구	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교환학생 <input type="checkbox"/> 복수학위학생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연수생: _____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학점인정학생			
성 명 <small>* 영문성명은 여권과 동일하게 작성</small>	(한글)	주민등록번호			
	(한문)	E-mail			
	(영문)	학번(학년)	(학년)		
소 속	학부(과)				
주 소					
전 화 번 호			휴대전화번호		
변경사항	<input type="checkbox"/> 포기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변경 <input type="checkbox"/> 과정변경 <input type="checkbox"/> 기간변경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사항 : _____				
	변 경 전		변 경 후		
수학대학					
수학과정					
수학기간					
변경사유 및 기타사항					
대리인 * 연락처	성 명			지원자와의 관계	
	주 소				
	자택전화			휴대전화	
	직장명			E-mail	
<p>본인은 수성대학교 국제교류학생으로서 사전에 허가받은 사항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.</p> <p>붙임 : 1. 입학허가서(해당자만) 2. 기타 구비서류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지원자 성명 : (인)</p>					
수성대학교 국제교류원장 귀하			경	학과장	
			유		

[별지 제5호 서식]

국제교류학생 출국전 수강상담표

구 분	□교환학생 □복수학위학생 □기타연수생: _____ □해외학점인정학생							
성 명		학번 (학년)	(학년)					
소 속	학부(과)							
전 화 번 호		E-mail						
수학대학교명		학 과						
수 학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 (총 개월, 개 학기)							
본교 과정이수 현황								
학기이수현황	총 _____ 개 정규학기 이수		졸업예정	년 월				
학점취득현 황	구분	기준학점	취득학점	잔여학점	미취득과목			
	교양필수							
	교양선택							
	전공필수							
	전공선택							
	전적대학인정학점(편입생)							
	계							
외국대학 과목이수 계획			본교 학점인정					
연 번	이수 학기	영문 과목명	학 점	종 별 1)	학 점	학수 번호2)	필수과목 본교 대체과목명2)	제2전공 인정 날인3)
1	-							
2	-							
3	-							
4	-							
5	-							
6	-							
7	-							
8	-							
지도교수 의 견								
<p>위 국제교류학생의 외국대학 수학 및 과목수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학업계획을 이행하도록 지도하였으며, 위에 정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우리대학 학점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과장 _____ (인) (년 월 일)</p>								

